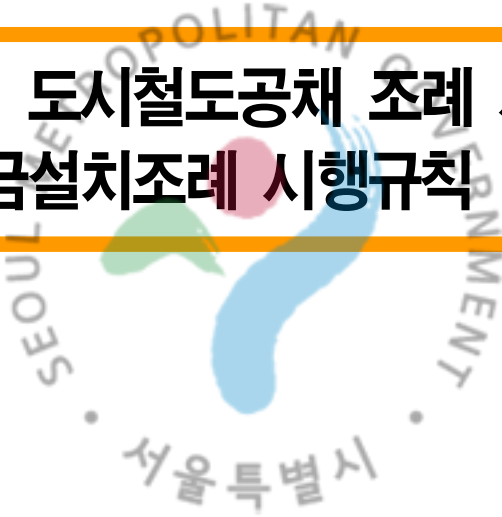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옥경	천정욱	윤준병	김상범	06/24 박원순
협 조	교통정책관 경영기획관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도시철도팀장			백호 이병한 정석윤 김상한 김갑수 이우룡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005
결재일자	2013.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및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2013.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문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브즈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타사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타자원 의 활 용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관계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산하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관계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및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시장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등을 인하하여 금융시장 흐름에 따르고 채권발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안행부 공기업과 984(13.5.2)호 의거, 전국 공동추진

채권발행 개요

1] 도시철도공채

○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 목 적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소요자금 조달

○ 발행방법

- 매출대상 :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등 인허가 및 등록 신청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2)
- 상환조건 : 7년거치 일시상환(연 2.5%, 5년 복리, 2년 단리)

※ 연도별 발행액

(단위: 건, 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건 수	1,415,200	494,547	476,975	443,678
금 액	17,972	6,117	6,203	5,652

2] 지역개발채권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 제19조(지방채 등)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0조

○ 발행방법 : 도시철도공채 발행방법과 동일

※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 동안 매출가능

※ 연도별 발행액 및 용자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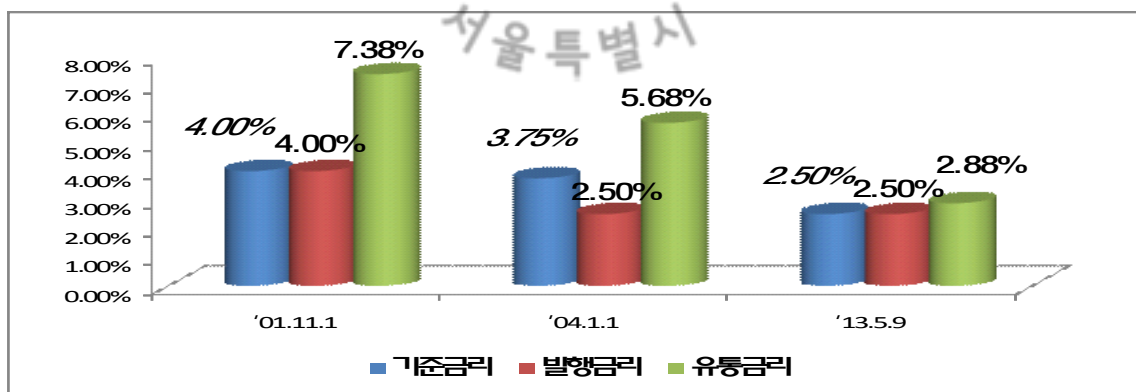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2012년
발행액	2,991	1,489	-	1,502	-
용자액(기관)	2,942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지역개발기금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및 제19조(지방채 등)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
- 기금구성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수입, 市출연금, 정부지원·용자금 등
- 기금용도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용자,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용자 등

■ 개정배경(필요성)

-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의 영향으로 도시철도공채(지역개발채권 포함) 유통금리가 발행이율(2.5%)에 근접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로 인하('13. 5. 9)

- 안전행정부에서 전 지자체의 액면 금리인하 변경 권고: 2.5%→2.0%
 -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2.0% 금리인하 추진 중
 - ※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전국 지자체 동일) : 연 2.5%

- 시중금리보다 채권발행 이율이 높을 경우 지방재원의 조달취지(장기 저리)에 반하는 등 운용상 비효율 및 부작용 발생우려
 - 장기적으로 시 재정손실 초래 및 시장가치 상승으로 수요급증 등 시장 과열 우려
 - 금리 역전시 현 은행거래 시스템상 발행불가 현상 발생

□ 주요 개정내용

① 도시철도공채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 도시철도공채 이율 인하 : 2.5% → 2.0% (안 제15조 제2항)
 - 시중금리인하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이율을 인하하되, 인하수준을 안행부 권고안(전국동일) 수준으로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공채의 이자 ※ 제15조(원리금 상환)제2항	연 2.5%	연 2.0%	안행부안대로 전국동일 금리적용

② 지역개발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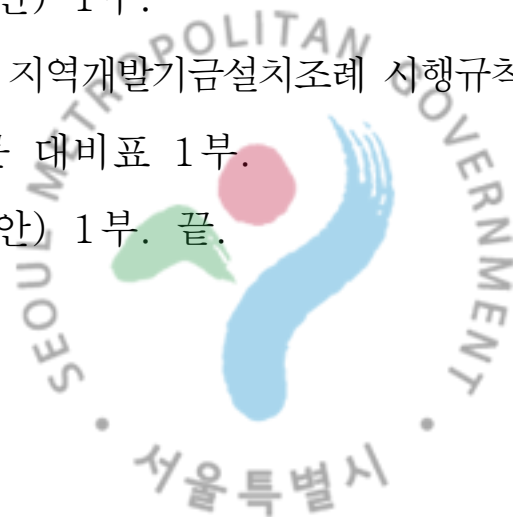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율 인하 : 2.6% → 2.1% (안 제4조 제1호)
 - 지역개발채권 이율인하에 따라 연동하여 인하하되, 인하수준을 개정전 채권 이율과의 차등폭 유지
- 지역개발채권 이율 인하 : 2.5% → 2.0% (안 제9조 제2항)
 - 시중금리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이율도 인하하되, 인하수준을 안행부 권고안(전국동일) 수준으로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율 ※ 제4조제1호(용자조건)	연 2.6%	연 2.1%	발행금리인하에 연동하여 인하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 제9조(매출조건)제2항	연 2.5%	연 2.0%	안행부안대로 전국동일 금리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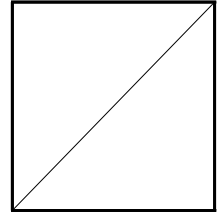
■ 추진일정

- 조례시행규칙 개정 방침 : 2013. 6월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 2013. 6~7월
- 개정안 공포 : 2013. 9. 1.

-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1부.
4.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입법예고(안) 1부. 끝.



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도시철도공채 이율의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우리시 도시철도공채 이율을 인하하여 도시철도공채 발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1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라. 기 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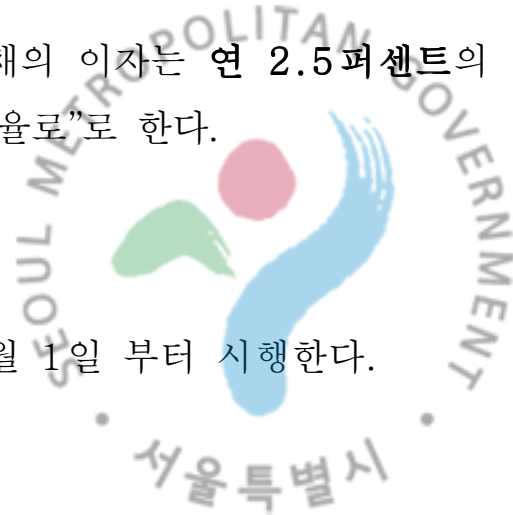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공채의 이자는 연 2.5퍼센트의 이율로”를 “공채의 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율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원리금상환) ① 공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일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 해당일로 한다.</p> <p>② 공채의 이자는 연 2.5퍼센트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p> <p>③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원리금상환) ① 공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일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 해당일로 한다.</p> <p>② 공채의 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p> <p>③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서울특별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우리시 도시철도공채 이율을 인하하여 도시철도공채 발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1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교통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2230, Fax : 02-2133-1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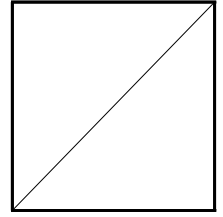
- E-mail : okyong@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4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및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우리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율 및 지역개발채권 이율도 이에 따라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이율인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연 2.6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하함.(안 제4조 제1호)
- 나.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9조 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라. 기 타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용자이율 : 연 2.6퍼센트로 하되,”를 “용자이율 : 연 2.1퍼센트로 하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하되,”를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로 하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용자조건)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조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용자이율 : 연 2.6퍼센트로 하되, 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잔여기간은 단리</p> <p>2. 용자기간 : 7년 이내의 기간</p>	<p>제4조 (용자조건)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조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용자이율 : 연 2.1퍼센트로 하되, 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잔여기간은 단리</p> <p>2. 용자기간 : 7년 이내의 기간</p>
<p>제9조 (매출조건)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지급한다.</p> <p>②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하되, 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잔여기간은 단리로 한다.</p> <p>③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에 해당되는 날로 한다.</p>	<p>제9조 (매출조건)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지급한다.</p> <p>②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로 하되, 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잔여기간은 단리로 한다.</p> <p>③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에 해당되는 날로 한다.</p>

서울특별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우리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율 및 지역개발채권 이율도 이에 따라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이율 인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용자 이율을 연 2.6퍼센트에서 연 2.1 퍼센트로 인하함.(안 제4조 제1호)
- 나.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6866, Fax : 02-2133-0825
- E-mail : suhee80@seoul.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